

□ 개요

○ 목적

- 예산 기능별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재난유형별 투자현황 파악 및 투자 성과·필요성 검토

※ 중앙은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예산 별도 집계·관리('15년~)

○ 내용

-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검토 대상의 확정을 위해 재난안전예산 범위를 설정하고 대상사업을 법적·유형별로 분류

※ 세출 예산 요구서 제출(7월) 이후 본격적인 분류작업 실시하고 해당 사업 목록으로 '23회계연도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규모 확정

□ 재난안전예산 범위

【 재난안전예산의 범위 】

- (개념적)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예산

※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의미(재난안전법 제3조(정의))

- (재난)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
- (재난관리)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
- (안전관리)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

- (실무적) 분류 담당자가 사업 목적 등을 검토하여 재난안전예산 해당 여부 결정

※ 사업 목적이 포괄적이거나 내용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

- (검토사항)

- ① 세부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재난·안전관리 목적인지
- ② 세부사업이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경우, 재난 및 안전관리가 목적인 내용의 예산 비중이 세부사업 전체 예산 규모의 50% 이상인지 여부

□ 법적·유형별 사업 분류

-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하되, 세부사업 내 사업내용이 다양한 경우,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

【 재난안전사업 분류 체계 】

■ (법적 분류 : 제1~5호)

※ 재난안전법 제10조의4제1항 제1~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

- (제1호)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- (제2호)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
- (제3호) 재난취약 지역·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
- (제4호) 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- (제5호)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5-1호 :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
 - 5-2호 :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

■ (분야별·유형별 분류 : 3개 분야 41개 유형)

※ 국가 전체의 통합적 예산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형별 분류체계를 우리시 예산관리에 적용

- (3개 분야) '자연재난', '사회재난 및 안전사고'로 우선 분류하고, 다수의 재난·사고 유형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'공통'으로 분류(공통 분야 분류 최소화)
- (41개 유형) 동일한 시설물이라도 운영목적, 사업의 적용대상 등에 따라 유형 분류가 상이하므로 유형별 정의 및 분류기준 등을 참고하여 분류 수행

※ 분류가 모호한 경우 담당자 주관적 판단 적용 가능

재난안전법 및 시행규칙 조문		내 용	적용사업 목록(예시)
제1호	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·안전관리를 위한 활동과 운영·지원 및 제도·기준·규제 등에 투자 ※ 재난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, 조사·관리·감독, 제도·기준 개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상황실 운영,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, 산불방지체계 구축·운영,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, 시민안전센터 운영,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 등
제2호	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·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·시스템·통신망 등을 새롭게 설치·확충하는 모든 사업 재난피해 저감과 안전 확보가 목표인 SOC사업 등 재난·사고 예방 강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수저류시설 설치, 회전교차로 설치, 가뭄대비 용수개발, 소방헬기 확충, 범죄예방안심마을 조성 등 재해예방시설 신축
제3호	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·시설·장치 등에 발생·내재된 재해취약·노후화·위험요인 제거, 취약분야 보수·보강 및 파손·손실 부분 복구, 기존의 시설 등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 ※ 노후시설·장비 정비, 위험지역 정비, 피해시설 복구, 구호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해위험지역 정비, 노후 위험 교량 시설개선, 수해상습지 개선, 재해복구, 응급복구, 임시주거시설 및 물자 지원도시침수 대응 정비,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
제4호	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 대응 훈련,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문화 확산, 안전한국훈련 실시, 시민안전교육 강화,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
제5호 부령 위임	시행규칙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(R&D)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재난 복원력 향상 연구,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연구
	부령 위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 밖에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방접종,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, 자살 고위험군 관리,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

분야	유형 (41개)		정의 및 분류기준	
자연 재난 (9개 유형)	풍수해		▶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에 따른 태풍, 홍수, 집중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* (제외 사업) 하수관로 정비(오수) 등 풍수해 예방이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사업	
	산사태		▶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산사태(산지붕괴), 토석류 등	
	가뭄		▶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	
	지진		▶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	
	황사		▶ 황사 발원지에서 대기를 통해 넘어 온 흙먼지 피해	
	조류		▶ 하천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녹조, 적조 등 * (제외 사업) 고수온 대응 지원('폭염' 유형으로 재분류)	
	대설·한파		▶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	
	폭염		▶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	
	낙뢰 등 기타		▶ 낙뢰, 화산활동, 우주물체 추락·충돌 등	
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(25개 유형)	화재·폭발		▶ 건축물, 차량, 선박, 문화재 시설 등의 화재 및 폭발 * (제외 사업) 의용소방대 지원(구조, 구급 및 응급의료 유형으로 재분류)	
	산불		▶ 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·사고	
	시설물 재난·사고		▶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* (제외 사업)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, 댐 등 보수·보강('풍수해' 유형으로 재분류), 교량·터널 등 도로구조물 보수·보강('도로교통 재난·사고' 유형으로 재분류)	
	교통 재난· 사고	도로교통 재난·사고		▶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* * 자동차, 이륜자동차, 자전거(전기자전거 포함), 원동기장치자전거(개인형 이동수단 등) 사고 포함 * (제외 사업) 도로 신규건설, 차선 도색 등
		철도교통 재난·사고		▶ 「철도안전법」 제2조에 따른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
		선박 재난·사고		▶ 「해사안전법」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▶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해수면·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* (제외 사업)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('농어업 사고' 유형으로 재분류)

분야	유형 (41개)	정의 및 분류기준	
	방사능 재난·사고	▶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관련 사고 및 원전기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*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	
	유해화학물질 재난·사고	▶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사고	
	미세먼지	▶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, 건강 등 피해 * 오염원 배출 최소화, 예보·예측 및 홍보, 국제협력 등 포함 * (제외 사업) 전기·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지원	
	수질오염	▶ 하·폐수 처리시설 부실 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* (제외 사업) 상수도 관리, 먹는물 수질 관리	
	해양오염	▶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	
	감염병	▶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	
	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	▶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전염병 관련 사업	
	생활·레저 사고	승강기 사고	▶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승강기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등) 운행 관련 사고 * (제외 사업) 승강기 설치
		전기·가스 사고	▶ 전기감전 및 발전·송배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가스 공급 관련 및 누출로 인한 사고(「전기사업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등 관련) * 감전, 가스누출 등 전기·가스로 인한 화재·폭발 사고 포함
		등산·레저 사고	▶ 등산,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* 수상레저 제외
		물놀이 사고	▶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*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포함
		생활제품 사고	▶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관련 사고, 불량 또는 불법적인 생활용품 관련 사고 등
	산업 재난·사고	사업장 산재	▶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각종 공사장, 산업단지,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
		농어업 사고	▶ 농·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 사고
	식품 사고	▶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* 축산·수산·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	
	의료제품 사고	▶ 의료제품 관련 부작용 및 사고 *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포함	

분야	유형 (41개)	정의 및 분류기준
	범죄	▶ 성폭력·가정폭력·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
	자살	▶ 「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	전시재난·테러	▶ 전시, 사변,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
공통 (7개 유형)	안전문화 및 교육·훈련·홍보	▶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, 훈련, 홍보,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
	구조, 구급 및 응급의료	▶ 119 구조·구급 관련 사업, 응급의료 활동 지원, 응급의료 체계 운영,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*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, 구급, 응급의료 관련 사업(관리체계, 교육·훈련 등 포함)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
	재난 구호 및 복구	▶ 예비비 성격의 사업,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
	재난안전관리체계	▶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,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,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, 조사, 진단 등
	국가핵심기반 사고	▶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* 관련 사고 * 국가핵심기반으로 공식 지정된 총 340개(20.6월 기준) 시설 : 에너지 48개, 정보통신 25개, 교통수송 55개, 금융 8개, 보건의료 29개, 원자력 40개, 환경 6개, 식용수 84개, 정부중요시설 12개, 공동구 28개, 문화재 5개
	안전취약계층 지원	▶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(보호시설 개선 등) * (제외 사업) 단순 복지 사업(어린이집 운영,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)
	교부세 및 기타	▶ 국제협력 등 기타

※ 각 사업은 '자연재난' 또는 '사회재난 및 안전사고' 분야로 우선 분류하고, 다수의 재난·사고 유형과 관련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'공통' 분야로 분류

□ 재난안전예산 분류 적용 사례

세부사업명	사업내용	재난안전예산 분류			
		해당 여부	법적	분야별	유형별
▶ 공공시설 유지관리	▶ 꽃묘 및 청소용 물품구입, 예초기 유류비 등	X	-		-
▶ 공공시설 유지관리	▶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, 제설 장비 유지 등 긴급재난 대처	○	1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시설물 재난
▶ 재난안전상황실 운영	▶ 재난안전상황실운영 및 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	○	1호	공통	재난안전 관리체계
▶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	▶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	○	2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물놀이사고
▶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	▶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가로등, 노후 제어판 정비 등	○	3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도로교통
▶ 농업기반정비(5억)	▶ 수리시설(용수로, 소류지 등) 개보수(3.8억) ▶ 경지정리, 농로개설 및 포장 등(1.2억)	○	3호	자연재난	가뭄
▶ 국가하천유지보수(7.4억)	▶ 제방, 배수문 등 시설물 정비(4.5억) ▶ 생태공원 유지관리 등(2.9억)	○	3호	자연재난	풍수해
▶ 학교폭력예방활동	▶ 학교폭력근절의날 캠페인 ▶ 교육·홍보물 제작 등	○	4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범죄
▶ 의약품 관리 연구	▶ 의약품 관리 관련 R&D	○	5-1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의료제품사고
▶ 가축질병 검진 및 검사	▶ 방역복, 질병검사재료, 소독약품, 보호장구 등 구입	○	5-2호	사회재난 및 안전사고	가축전염병
▶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	▶ 민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	X	-		-
▶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	▶ 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사업	X	-		-
▶ 박물관 관리(4억)	▶ 시설물 유지 및 안전 관련 예산(0.8억) ▶ 운영 관련 예산 (3.2억)	X	-		-
▶ 건축관리(1.3억)	▶ 건축물 시설 안전점검 비용(0.2억) ▶ 건축물 인·허가 업무, 건축위원회 운영, 민간 인 참여 보상 등(1.1억)	X	-		-

※ 동일한 사업명이라도 사업내용이 상이한 경우, 재난안전예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□ 유형별 주요 제외사업

유형	제외 사업
풍수해	▪ 하수관로(오수) 정비, 단순 하천 친수시설 설치 등
조류	▪ 고수온 대응 지원 등
시설물 재난·사고	▪ 풍수해 대비 저수지·댐 등 보수·보강(풍수해 유형으로 분류)
	▪ 교량·터널 등 도로 구조물 보수·보강(도로교통 재난·사고로 분류)
도로교통 재난·사고	▪ 도로 신규 건설, 차선 도색, 단순 주민편의
미세먼지	▪ 전기·수소 자동차 보급, 충전 인프라 지원 등
수질오염	▪ 상·하수도 관리, 먹는 물 수질 관리 등
안전취약계층 지원	▪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(기능보강 제외)
	▪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(도로교통 재난·사고로 분류)

□ 공통분야 내 유형 재분류 예시

세부사업명	유형 분류	
	잘못된 분류	적합한 분류
국가안전대진단	시설물 재난·사고	⇔ 재난안전관리체계
의용소방대 지원	화재·폭발	⇔ 구조, 구급 및 응급의료
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	안전문화 및 교육·훈련·홍보	⇔ 구조, 구급 및 응급의료
A지역 정수장 유지보수	시설물 재난·사고	⇔ 국가핵심기반사고*

* 「재난안전법」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 대상의 재난안전예산은 국가핵심기반 사고 유형으로 분류(국가핵심기반 시도별 지정현황에 명시된 시설만 해당)